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주철현 · 황운하 · 김 현
김성범 · 송옥주 · 정준호
임문영 · 염태영 · 진성준
어기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가입)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29조(가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